Sh평생주거래우대통장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 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1515/1644-151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uhyup-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Sh평생주거래우대통장

■ 상품특징: 전자금융 및 같은·다른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치 기간별 또는 잔액구간별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

2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증서,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 입 대 상	실명의 개인(1인1계좌)				
가 입 금 액	제한없음				
상 품 유 형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계정과목 : 저축예금)				
	• 신규 : 영업점, 비대면채널(스마트폰뱅킹)				
거 래 방 법	• 해지 : 영업점,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 기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부터의 전환 가입 불가				
	•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계 약 해 지 방 법 • 단, 영업점 신규계좌의 비대면 채널 해지는 성년인 개인만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다른 수협은행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 Sh평생주거래우대통장(잔액구간별)					
금리적용기준별					
세 부 상 품	※ 위 2가지 세부상품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선택하신 세부상품에 따라 금리				
	가 달리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의 금리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도 변경한 날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합니다.				
	■ 잔액구간별 기준 (단위: 세금공제 전 기준, 연, %)				
기 본 금 리	자에그가				
(기준일:2024.07.29)	구분 범위 급디 미 꼬				
, , , ,	I 구간 매일최종잔액100만원 이하 0.05 기본조건을 만족 시, 매일 최종잔액에				
	I 구간 매일최종산액100만원 조과 0.10 대하여 예금잔액구간에 따른 금리로 구				
	Ⅲ 구간 메일최종잔액300만원 초과 0.10 간별 차등 적용됩니다.				

	■ 예치기간별 기준		(단위 : 세금공제 전 기준, 연, %)			
	7.4	예치기간	금리	비고		
	구분	범위		·		
	I 구간	입금일로부터 30일까지	0.05	기본조건을 만족 시, 매일 최종잔액에		
	표 구간	31일부터 180일까지	0.10	│ 대하여 예치기간에 따른 금리로 기간에 │ │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 □ 구간	181일부터	0.10			
	● 기본조건					
				해야 각 구간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용받습니다 . 단, 신규가입고객인 경우		
	_			다음달 말까지 적용받습니다.		
		전월 입금실적이 100만	-			
	·이 예금 7	전월 평균잔액이 50만원	l 이성	F		
	·이 예금 전	선월 <u>자동이체(유의사항</u>	<u>중 자</u>	동이체항목 참조) 건수 3건 이상		
추 가 우 대 금 리	Ⅱ구간에 대혀	ㅏ여 연 0.1%p (추가우□	배금리	대상 항목 참조)		
	• 아래의 대상이	네 대해서는 기본조건 충족	시 ″Ⅱ	구간"금리를 연 0.1%p 우대 적용		
	가. CIF신규	고객(상품 <u>출</u> 시일 이후의	CIF	신규고객)		
	나. 어업인(4	닌고 및 면허 허가업자)				
추가우대금리대상	다. 기초생활	<u></u> 上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수급기	자 증명서 발급가 능 자)		
	라. 장애인(7	장애인등 록증 또는 장애	인증명	명서 발급가능자)		
	마. 만19세	미만 소년소녀가장(주민	<u> </u>	등본상 확인가능자)		
	※ 나~마 항	목의 자격확인은 영업점	d에서!	만 가능		
	■ 잔액구간별	! 기준				
	·매월 제3년	토요일의 다 <mark>음</mark> 날에 이지	·를 지	급		
	■ 예치기간별	! 기준				
	·매월 제3년	토요일의 다 <mark>음</mark> 날에 이지	-를 지	급		
	·입금 건별로 구분하여 적용. 단, 입금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회차로 계산함					
	이 예금의 이자는 먼저 입금한 자금을 먼저 출금하는 방식을 적용					
이자 계산방법	• 이자계산기	간				
(산출근거)	1. 해지일의	_ 이자계산기간 : 입금일 <u>!</u>	또는 원	일가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이자계산기간				
		고객 : 최초 예금일부터	이자	계산 기준일까지		
		고 객 : 원가일부터 다음				
	- 매일 최종 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금리로 계산함.					
	- 이자지급일 이	기후에는 이자지급일 전일계	사로 기	산일 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u>원가일^{쥐)}</u> :[배월 제3토요일, 단 <u>법정</u> 공	휴일주	인 경우 직전 영업일까지 계산하여		
	다음날 지급					
이자지급시기	* 최 종 거래일	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	터는 이	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해지일		= 1112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인터넷뱅킹 텍레뱅킹 모	바인비	뱅킹) 당·타행 이체수스료 며제		
	가. 전자금융(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 당·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단, 상담원을 통한 이체는 면제 제외)					
우 대 서 비 스	(근, ㅎ = 근 = ㅎ 한 의 제 는 근 제 제 되) 나. 수협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중 현금인출수수료 면제(다른은행 이체수수료는 면제 제외)					
	다. 다른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수수료 면제(단, 제휴ATM기 제외)					
연계·제휴서비스			<u> </u>			
교계 계류시키―		ト (Cト Ο해이 ᄉӀトᄋ H	FO 7:	I O 에마 가느 \		
양도 및 담보제공		h (단, 은행의 승낙을 받	:⊏ 7	3ㅜ께진 기궁/		
	• 담보제공 :	불가				
자 동이 체 등 록	가능					

예 금 자 보 호 여 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 보호금융상품 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 산) 보호됩니다.
세 제 혜 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세법이 변경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 금 및 이 자 지 급 제 한	 계좌에 압류^{주3)}, 가압류^{주4),}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 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 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거 래 중 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편입시기 : 연 2회(매년 6월, 12월 제3 토요일 기준으로 익일인 일요일에 편입)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행 영업점에서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거래 가능
휴 면 예 금 및 출 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주5)}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 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 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 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 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 료 열 람 요 구 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비대면 신규 후 통장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기타유의사항
 - 1. 자동이체항목 (이 통장에서 아래 수협은행에서 정한 방식으로 공과금, 급여, 연금 등이 입금 되거나 출금되는 경우의 자동이체를 말합니다.)

출금이체	입금이체			
① 계좌간 납입금 (적립식예금,펀드,신탁,공제)	① 수협은행과 급여이체 계약에 따른 급여입금			
② 금융결제원을 통한 출금이체	② 금융결제원을 통한 입금이체			
(CMS, 지로 등)	(CMS,지로대량이체,국가재정시스템에 따른 입금 등)			
③ 펌뱅킹출금이체	③ 펌뱅킹입금이체			
④ 대량이체출금이체	④ 대량이체입금이체			
⑤ 납부자출금이체	⑤ 납부자입금이체			
⑥ 아파트관리비출금이체	⑥ 수협공제연금수령금입금이체			
⑦ 수협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 2. 이 예금은 사업자번호로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텔레뱅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상품은 Sh수협은행 디지털개인금융부(1588-1515)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주1) 원가일	■ 이자를 지급하여 통장에 입금하는 날, 이자계산기준일의 다음날
주2) 법정공휴일	■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날
주3)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 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주4)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 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쌍방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일
주5)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